

---

# 입 법 정 보

2018-20호

---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 목 차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4
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7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9
4.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
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
6.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11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9.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5
10.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5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6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6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7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7
15.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18
1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9
1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
1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20
19.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안) (소방청).....	21
2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21
21.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2
2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
2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
24.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24
25.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 (국방부).....	24
26.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27. 농어업경영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26
28.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6
2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7
30.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8
3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9
3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30
3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31
3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1
35.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2
3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2

3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3
38.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4
3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4

##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1. 13.      • 마감일자 : 2018. 12. 24.
-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 1) 주민의 권리 명확화
      -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명시
    - 2)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 개선
      - 주민이 조례 제정, 개·폐를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별도 제정)
      - 청구요건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하여 현재보다 완화하고, 법률에는 상한만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하여 자율성 강화
    - 3)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개선
      - 주민감사 청구인수 상한기준 하향 조정 및 청구가능기간 연장(2년→3년)
      - 단순청구권(조례안제출권, 주민감사청구권 등) 기준 연령 완화(19세→18세)
    - 4)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 및 활성화
      - 주민자치회 구성·사무 등 기본사항과 국가나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세부 운영사항은 조례에 위임
    - 5)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 자치단체 인구규모·재정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구체적인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법률 제정)

## 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 1) 사무배분 원칙 확립 및 “자치분권 영향평가” 제도 도입

- 사무배분의 기준으로 사무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준수 의무 부과
- 법령 등 제·개정시 사무배분 적정성, 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

### 2)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 시·도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도 부단체장 1개 직위(인구 500만 이상 시·도는 2개)를 조례로 설치 가능토록 자율성 부여

### 3)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 지방의회 운영 관련 조항(표결 선포 방법 등) 삭제·조례 위임
- 시·도의회부터 단계적으로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

## 다.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 1)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방법 및 공개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정보공개 의무 신설, 종합공개 추진

### 2) 지방의회의 윤리성 및 책임성 강화

-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하며, 민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전 의견수렴) 신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대 및 협력의무 신설

- 국정통합성 제고를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연대 및 협력 의무를 신설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균등한 서비스 제공 보장

### 4) 기초자치단체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

- 시·군·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 명령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발전협



## 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1. 13.      • 마감일자 : 2018. 12. 24.

○ 어려운 용어 및 한자어 표기나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물자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품목을 사용하는 품목으로 변경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와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시 통·리장의 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며, 민방위기 폐기절차에 시·도지사의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 및 민원처리기준표 정비에 따른 구비서류를 감축, 민방위 교유훈련 불참자 보충교육 기회의 탄력적 운영, 민방위 복제 운용규정 세부사항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지역민방위협의회의 통합운영 근거 마련(안 제3조)

- 1)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개최실적이 적고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있을 경우,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민방위 준비 시설·장비·물자 용어 등 정비(안 제9조)

- 1)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물자의 용어가 일부 비표준어 및 한자어로 표기되어 있으며, 현재 사용하지 않는 품목이 일부 지정되어 있어 이를 표준어 및 우리말로 순화하고 미사용 품목을 통용 품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2) 종전의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함.

다.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시 통·리장 확인 폐지(안 제18조)

- 1) 식별이 가능한 심신장애자의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시 통·리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1인가구 증가 및 경제구조 다변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통·리장의 확인서 첨부가 불합리한 경우가 많고 통·리장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통·리장의 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진단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라. 일본식 용어의 정비(안 제26조)

- 1)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함.

마. 타 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9조)

- 1) 병역법과 예비군법의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상의 용어를 변경함.

바. 종전 법률 제명 인용 조문 변경(안 제34조)

- 1) 자체 교육훈련 인정 대상 관련 종전 법률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인용한 조문을 변경함.

사.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사항 변경(안 제39조)

- 1) 민방위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아.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세부사항 변경(안 제47조)

- 1) 민방위 복제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근무복 하의, 겨울 점퍼, 민방위 신발을 삭제하고, 소재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훈령)을 폐지하고 민방위 복제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포함시켜 일원화 하고자 함.

자. 민방위기 폐기절차 시·군·구에 이양(안 제53조)

- 1) 현 법령상에는 민방위기를 영구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민방위 업무는 각 시·군·구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차. 민원처리기준표 정비에 따른 구비서류 감축(안 제55조)

- 1) 재해 보상금 신청 시 휴업 보상금의 경우에 신청인이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확인이 가능하므로, 민원이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삭제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변경함.

카. 타 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57조)

- 1) 타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번호 변경에 따라 해당 인용 조문(별

지 서식 번호)을 현행화 하고자 함.

###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11. 13.      • 마감일자 : 2018. 12. 24.

○ 제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자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하고, 제조시설 중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취급시설 기준을 개선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 등의 변경허가·신고 기한 명확화(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 1)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업소명 등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신고 및 품목제조신고 사항 변경시 관할 행정관청에 알려야 하는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 유발
- 2) 변경허가·신고 기한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나. 한시적 영업을 하려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 영업신고 간소화(안 제5조제7항)

- 1)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가 박람회, 행사장 등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행정관청에 새로이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2)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가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기존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영업신고를 갈음함으로써 영업자 편의 증진 및 판매 활성화

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 인정기준 개선(안 제19조제4항)

-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영업 중단 후 재개 시 안전위생교육을

신규로 받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 개선 필요

-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보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중복 교육으로 인한 불편 해소

라.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 이력추적관리 의무화(안 제29조의2)

-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 하고 있어 중간유통단계의 사각지대 발생
- 2) 제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자를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

마.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취급시설 기준 개선(안 별표 1)

- 1) 건강기능식품이 위생적으로 제조되도록 관련 시설기준을 개선할 필요
- 2) 취급시설 중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취급시설 기준을 개선하여 안전관리 강화

#### 4.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1. 13.      • 마감일자 : 2018. 12. 24.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4(비행장 설계 및 운영) 제14차 개정 에 따라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MGWS)을 적용한 활주로 및 유도로 등 설계기준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공항시설 및 비행장 설치기준에 반영하고, 별지36호 서식을 ICAO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권한 부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보완하고자 함

#### 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1. 13.      • 마감일자 : 2018. 11. 23.

-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표기를 위한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에 따른 내용을 건축물대장 서식에 반영하고, 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기준을 「건축법」 규정에 맞게 일부 완화하며, 건축물대장을 발급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변경에 관한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별지서식 및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6.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1. 14.      ● 마감일자 : 2018. 12. 24.
- 일반국도 중 태양광발전시설 및 측도에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 변속차로 설치길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측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할 경우 적용기준 신설(안 별표5)
    - 측도의 차량통행량, 통행속도, 연결 시설물의 용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본선의 변속차로 설치길이 보다 완화한 기준 신설함.
  - 나.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규정 신설(안 별표5)
    - 태양광발전시설의 교통유발 효과 등을 고려한 변속차로 설치기준 신설(도로모서리 곡선화)함.

##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1. 14.      ● 마감일자 : 2018. 12. 24.
- 지명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여 지명위원회 심의 의결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명결정 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신고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적극적 업무행태를 유도하고자 신고제 합리화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명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 산, 하천, 호수 등 자연지형의 이름과 교량, 터널, 교차로 등과 같이 공공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물의 이름을 지명으로 정의
- 나. 지명결정 절차 간소화(안 제91조제2항 및 제3항)
  - 시 군 구 행정구역 경계에 걸쳐 있지 않은 지명에 대해서는 지명 결정 권한을 시 도 지명위원회로 이양하여 지명결정 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
- 다. 신고제 합리화(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제93조제2항 및 제3항)
  -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11. 14.                      • 마감일자 : 2018. 12. 26.

○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학생연구원의 처우개선 등 그간 발표된 정책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및 과제지원시스템의 통합 구축·운영 근거와 연구장비 및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연구비사용 방식의 표준화·간소화

- 1) 현행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에 분산되어 있는 회의비, 출장비 등을 연구활동비로 통합함(안 별표2)
- 2) 소액의 소모성 경비인 사무용품비, 회의비, 식비, 연구환경유지비 및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과제운영비’로 묶어 연구활동비 내로 편성하고 정산을 면제함(안 제19조제12항 및 별표2)
- 3) 간접비 내 ‘대학연구활동지원금’은 연구자·학과·연구부서의 간접비 기여분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별표2)

- 4)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부공동이용 근거 등을 명시함(안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4제1항 내지 제5항, 별표2)
- 5) 영수증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보존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9항)

나. 연구자의 자율적·안정적 연구활동 보장

- 1)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직접비는 매년 정산하되 집행 잔액은 다음해로 이월을 허용함(안 제9조제3항, 제19조제15항)

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완화

- 1) 현행 평가위원 제외대상인 동일 기관 소속 전문가를 동일 기관의 동일 학과, 부서 등 최소 부서 단위 전문가로 좁혀 선정평가의 지나친 상피제 기준을 완화함(안 별표1)
- 2) 동일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 등이 다른 경우에는 연구과제 중복의 예외 사유로 인정함(안 제7조제3항)
- 3) 기술창업의 지원 기간 만료 시 연구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 자체 규정을 통해 추가 5년까지 연장을 허용함(안 별표2)

라. 악의적 연구비 부정행위 예방 및 사후 조치 강화

- 1) 연구과제 협약의 당사자인 연구기관이 연구비 환수금을 책임지고 납부하도록 환수금 납부 주체를 연구기관으로 명시함(안 제27조제11항)

마.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제한

- 1) 연구비 정산결과 직접비 집행율이 50%미만으로 저조한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금액은 회수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 2) 매년 연구비 정산결과 연구수당 집행율이 직접비 전체 집행율보다 20%포인트를 초과한 경우, 20%포인트를 초과한 연구수당분을 회수함(안 별표2의2)
- 3)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지급률은 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

규정으로 마련하도록 함(안 별표2)

바. 연구과제 평가결과 공개 확대

- 1) 선정평가 뿐 아니라, 중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등 모든 연구과제 평가에 대해 평가위원 명단 및 종합평가 의견 등을 국가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7항, 제16조제7항)

사. 학생연구원 등 처우 개선

- 1) 박사후연구원 등 내부연구원은 소속된 연구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
- 2) 학생연구원 등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안 제9조 제7항)

아. 연구행정 지원체계 내실화

- 1)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를 산학협력회계 내에서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별표2)
- 2) 대학의 단과대, 학과, 연구실 등에서 행정인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 계상을 허용함(안 별표2)
- 3) 과제지원시스템(PMS)의 통합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25조제30항 및 제31항)

자. 연구장비 및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강화

- 1) 연구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 내 연구 시설 단위로 연구장비비의 통합 계정을 두고, 소관 연구과제별 연구장비비를 통합 계정으로 모아서 유지·보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5)
- 2) 정부R&D 과정에서 산출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데이터의 정의, 연구과제별 데이터관리계획(DMP)의 도입, 관련 정보의 등록 등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25조제16항, 제28항 및 제29항)

## 9.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8. 11. 14.      ● 마감일자 : 2018. 12. 24.
- 경비지도사 시험을 매년 실시하도록 경비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시 시험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필요시가 아닌 매년 수립하도록 개정(안 제11조제1항)

## 10.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11. 15.      ● 마감일자 : 2018. 12. 26.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역거래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감정평가 기관을 감정평가법인으로만 한정하여 감정평가사들의 신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도 동 감정평가가 가능하도록 감정평가 기관을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를 통칭하는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여 감정평가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를 제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무역거래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공유지 (수의계약)매각 시, 감정평가사도 평가가액 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현재, 무역거래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공유지 매각가격의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만이 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는 제외
    - 이에, 감정평가 기관을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를 통칭하는 “감정평가업자” 로 변경하여 감정평가사도 동 평가가 가능토록 함

##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1. 15.      • 마감일자 : 2018. 12. 5.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가 인상 등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738에서 1만분의 851로 조정하려는 것임.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1. 15.      • 마감일자 : 2018. 12. 26.
-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를 통해 결정된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9·21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및 그 동안 제도운영 상 미비점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수소충전소 입지 완화(안 별표 7~11, 22 개정)
    - 1)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에서의 수소자동차 충전소 입지 제한 완화
  - 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부채납 대상 확대(안 제42조의3제1항, 제46조제1항)
    -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조례가 정하는 시설도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개선
  - 다. 일반게임제공업시설 건축제한 명확화(안 별표 4~7 개정)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용도지역 상 입지제한 규정이 불일치하여 입지제한 통일
  - 라. 기타 미비점 개선(별표 4~6, 8, 11, 13, 16~17, 19, 21, 23)
    - 1) 자연녹지지역 등 야영장이 수련시설 설치시 야영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 별도로 분리 필요

###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1. 15.      ● 마감일자 : 2018. 12. 26.
-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9·21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및 그 동안 제도운영 상 미비점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추가(안 제6조제1항제6호)
    - 1) 가스공급설비 중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 나.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의 조건 명확화(안 별표2 제7호)
    - 1)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의 100미터는 직선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표현

###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8. 11. 16.      ● 마감일자 : 2018. 12. 28.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하여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개최횟수가 1회로 제한되어 있어 전국 또는 광역지자체 등 조합의 업무구역에 산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특정 장소에 집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어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횟수를 후보자간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횟수를 현행 1회로 제한한 것을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제4조의2 관련)' 일부 개정)

15.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11. 16.      ● 마감일자 : 2018. 12. 26.
- 수신료 납부과정에서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수신료 징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수신료 면제절차 간소화(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개정)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수신료 면제 대상자 중 별도의 증명 없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나. 한국방송공사 또는 수신료 위탁징수자에게 수신료 감액제도 안내 공지 의무화(방송법 시행령 제45조제4항 신설)
    - 방송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신료 감액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수신료 납부의무자가 이를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 또는 수신료 위탁징수자에게 감액제도 안내 공지를 의무화하고자 함
  - 다. 수상기 미소지자의 과오납 수신료 환급 근거 신설(방송법 시행령 제46조 개정)
    - 방송법 시행령 제46조가 수상기 등록자의 과오납 수신료에 대한 환급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상기 미소지자에게 수신료가 부과되어 환급 민원이 많은 사례를 고려하여 수상기 미소지자의 과오납 수신료에 대한 환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라. 수신료 체납 시 가산금 비율 하향 조정(방송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개정)
    - 방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료 체납 시 가산금 비율을, 수신료와 법적성격이 유사한 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수신료 납부 독촉장에 가산금 부과 근거를 고지하도록 함
  - 마. 수상기 등록면제, 수신료 면제 관련 조항 정비(방송법 시행령 제 39조 및 44조 개정)
    -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의 수상기 등록면제 대상과 시행령 제44조

의 수신료 면제대상 각 호의 순서를 면제사유의 중요성과 유사성을 감안하여 재배치함으로써 법적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함

## 1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1. 19.      • 마감일자 : 2018. 12. 31.

○ 민원의 접수창구를 확대하고, 고충민원의 처리절차에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포함하여 규정하며, 민원처리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민원처리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민원 접수창구의 확대(안 제6조제1항)

1) 민원의 접수창구를 민원실 이외에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까지 확대함

나. ‘다른 행정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기술(안 제12조제8항)

1) 법 제14조제1항의 행정기관의 장과 다른 행정기관의 용어의 의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의 행정기관의 장과 다른 행정기관의 의미가 상반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다. 고충민원 처리절차에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포함(안 제17조제8항)

1)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한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민원처리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한 보상조치(안 제22조제3항)

1) 민원처리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직원 및 부서에 대하여는 보상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출력매수 제한조치 삭제(안 제30조제1항)

1) 민원인이 출력한 전자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각호의 조치 중 출력매수 제한조치를 삭제함

바. 권한의 위탁(안 제54조)

- 1)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중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안내 후 접수된 민원의 처리실태 확인·점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안내한 민원과 관련된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및 결과 분석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위탁함
- 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위탁한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추진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1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1. 19.      • 마감일자 : 2018. 12. 31.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필요 없으나 가족 또는 위임장 소지자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필요함에 따라 신청서 상의 “구비서류:없음”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혼란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변경
    - 1) 앞쪽의 “구비서류:없음”을 삭제하고 뒤쪽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수정함

1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11. 19.      • 마감일자 : 2017. 12. 31.
- 부사관 진급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를 삭제하고 진급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부사관 진급선발 대상권 등 개선(안 제26조)
    - 1) 군사법원에 기소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군무이탈 중인 자라 하더라도 제적되기 전까지는 현역 신분이 유지되므로 진급 최저 복

무기간에 달한 자는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될 권리를 보장하고, 전·공상 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자의 진급선발 제외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삭제하는 등 부사관도 장교 진급 선발 대상권과 동일하게 부사관 진급선발 위원회에 부쳐질 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함.

나. 진급낙천 및 진급발령 전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등 신설(안 제 26조의2부터 제26조의8까지)

1) 부사관의 진급낙천과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등 법적근거를 마련함.

## 19.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8. 11. 20.      • 마감일자 : 2018. 11. 30.

○ 소방장비 인증기관의 법령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과징금 금액은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정지 1일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에 따라 업무정지 1일에 해당되는 과징금 금액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으로 구분하여 정함(안 별표 3)

## 2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11. 20.      • 마감일자 : 2018. 12. 31

○ ‘통신제한조치 연장’, ‘위치정보 추적자료’, ‘기지국 수사’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위헌적 요소 제거 필요

○ 주요내용

가.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내란·외환의 죄 등 국가안보 관련 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3년으로 함(안 제6조 제7항)

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시 ‘보충성’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 요건 충족을 원칙으로 하되, ‘과거 위치정보 추적 자료’,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및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2항)

다. 특정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시 ‘보충성’(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 요건 충족을 원칙으로 하되,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및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3항)

라. 기소중지결정·참고인중지결정시 처분을 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 각 그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제공요청기관·기간 등을 서면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함(안 제13조의3 제1항)

## 21.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1. 20.      • 마감일자 : 2018. 11. 26.

○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우수기관에게 우수운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우수운영자가 아닌 자가 이를 표시하는 행위,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시행령 안 별표1)

1)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의 경우 1회 위반

시 30만원, 2회 위반시 70만원, 3회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2) 법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함

## 2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11. 20.      • 마감일자 : 2018. 12. 31.

○ 정보보호 공시 활성화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기준, 방법 등을 정하는 고시 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보호산업 진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위임·위탁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보보호 공시의 명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내용의 작성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의 고시 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4항)
- 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되어 있는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업무의 법령상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일부 전문기관에만 위탁되어 있는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정보보호 인력양성 사업을 다양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안 제27조)

## 2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11. 20.      • 마감일자 : 2018. 12. 31.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3년) 도래(2019년 1월 1일)에 따라 규제 지속 여부 등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신청은 비규제 조항으로, 정

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변경, 양도·합병신고는 일몰기한이 필요 없는 조항으로 변경함.(안 제16조)

## 2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8. 11. 21.      ● 마감일자 : 2018. 12. 31.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18.2.9.)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관련 거짓 자료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의 개정(별표 5)
    - 1)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25.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8. 11. 6.      ● 마감일자 : 2018. 12. 17.
- 합동참모의장의 지휘 하에 국방사이버공간 상 작전사령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부대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부대명칭 변경(안 제명 및 제1조)
    - 1)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군에서 활용하는 사이버공간(국방사이버공간) 상 사이버작전을 수행하는 전투부대임을 강조하기 위해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
  - 나.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임무 구체화(안 제1조 및 제2조)
    - 1) '국방 사이버전'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기술되어 있어 범위가 불분명하던 임무를 '합동사이버작전교범'에 따라 '사이버작전'에 관한 임무로 구체화
  - 다. 2급 군무원 부사령관 신편(안 제3조 및 제4조제2항)
    - 1) 현역 사령관을 보좌하여 안정적인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록 부사령관을 2급 군무원으로 보하고, 사령관 부재시 직무 대행하도록 규정

라. 합동부대로 지정(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

- 1) 합동참모의장이 사이버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합동부대로 지정하고, 합동부대로 지정되기 전 국방부장관에게 있던 참모부서 설치 등의 권한을 합동참모의장에게 부여

마. 부대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안 제7조)

- 1) 부대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나 요구를 받은 경우 이의 제기 후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사이버작전상 긴급조치 규정(안 제8조)

- 1) 사이버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하고,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

## 26.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11. 21.      • 마감일자 : 2018. 12. 31.

○ 우편법 시행령 개정(2018. 8. 22. 시행)\*의 후속조치 및 우편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일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등에 등기우편물 배달 근거 마련(안 제134조 등)

- 1) 기존 우편수취함 및 우편사서함에는 등기우편물 등의 투함이 금지되어 있으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등의 경우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

나. 상향입법된 연체료 조항 삭제(안 제104조)

- 1) 우편법 시행령 으로 상향입법되어 효력을 상실한 우편요금 등의 연체료 관련조항을 삭제함

다. 요금후납 우편물의 취급방법 하향입법(안 제98조)

- 1)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금후납 우편물의 계

약절차, 표시인영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로 위임함  
라. 우편서비스 안내사항 정비(안 제2조)

1) 우체국 내 안내판에 게시하도록 한 사항 중 인터넷 공고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우편구’ (우편물 배달지역)를 삭제함

마. 법령용어 수정(안 제90조 등)

1) ‘우편요금계기’ → ‘우편요금표시기’

## 27. 농어업경영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11. 22.      • 마감일자 : 2019. 1. 2.

○ 어업경영체 등록 시 기존에 경영주 외의 어업인으로 등록되었던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어업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경영체 등록 서식(어업인용) 개선(별지 제3호 서식)

1) [별지 제3호 서식]의 경영주 외의 어업인 기입란에 공동경영주 여부를 표시 가능하도록 서식을 개정하여 여성어업인의 권리를 보장

## 28.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1. 23.      • 마감일자 : 2018. 12. 3.

○ 공직 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 휴직할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휴직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할 필요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첫째자녀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 인정 확대 (안 제31조6)

1) 공직 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경력인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부부가 모두 일정 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 째자녀에 대해서도 휴직기간전체에 대해 경력을 인정하도록 함
- 3) 경력 인정 확대에 따라 공직 내 남성육아휴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2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1. 23.      • 마감일자 : 2018. 12. 13.

- “신혼·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을 구체화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와 행복주택 공급 비율 유연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 주요내용

가.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 신설(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6의2 신설, 별표4, 별표 5)

- 1)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납입하고, 일정 자산 요건을 충족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이하), 주택공급가격이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가입 할 것
- 2) 공급물량의 30퍼센트는 혼인기간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공급
- 3) 신혼희망타운주택과 동일 단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공급량의 전부를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나. 한부모가족의 공공주택 입주자격 확대(안 별표4, 5, 6 개정)

- 1)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격 부여

다. 행복주택 공급비율 유연화 등(안 제23조제3항, 제23조의2제2항, 별표 5 개정)

라. 용어순화 및 미미사항 정비 등(안 제14조, 제23조, 별표 4 개정)

### 30.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8. 11. 23.      • 마감일자 : 2019. 1. 20.

○ 노면전차 전용로를 도입하고 노면전차의 통행방법을 규정하는 등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노면전차의 등화장치 조작 방법 등 운전자 준수사항과 노면전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할 과태료 및 범칙금을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실험·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 대중운송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시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긴급자동차 준수사항의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 단속대상인 속도 등 위반 자동차등에 노면전차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시장등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노면전차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야기의 주체에 노면전차를 추가함(안 제4조제1호)

다. 노면전차를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를 정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라.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의 등화 조작 방법을 노면전차에도 적용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마. 교통사고 발생 시 국가경찰공무원이 조사해야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통사고 유발 요인의 하나로 ‘노면전차의 결함’을 추가함(안 제32조제7호)

바. 차 뿐만 아니라 노면전차에 대해서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시 차적지 관할 지역이 다른 관할 구역인 경우 차적지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제8항)

사. 대중운송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율주행차의 실험·연구 목적으

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별표 1)아. 노면전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승합자동차등’ 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6, 별표7)

자. 노면전차 전용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노면전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승합자동차등’ 과 동일한 금액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8, 별표9)

### 3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8. 11. 23.      • 마감일자 : 2019. 1. 2.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법인 등의 지정 요건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노면전차 전용로를 도입하고 노면전차의 통행방법을 규정하는 등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도로를 통행하는 노면전차에도 최고·최저 속도 제한 및 약물 운전 금지를 적용하고 노면전차용 신호등과 노면전차 전용도로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를 정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심부 도로에서의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지정(안 제19조제1항제1호 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설정하되,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청장이 제한속도를 60km/h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9제1항제1호가목)

2) 도심부 외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현행과 같이 60km/h이내(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로 동일하게 규정(안 제19조제1항제1호나목)

나. 노면전차의 최고·최저 제한속도 규정(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다. 노면전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

을 금지함(안 제28조)

- 라.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 관련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마다) 설정(안 제141조의2)
- 마. 노면전차의 통행을 규제하는 신호등의 종류와 뜻, 설치 기준 및 배열순서 등을 정함(안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 바.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시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노면전차 주의 표지 및 노면전차 전용도로 표지를 신설함(안 별표6)
- 사. 노면전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및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감경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별표39)
- 아.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자 적발 시 사용되는 각종 서식을 노면전차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서식의 세부 내용을 개정함(안 별지 제21호서식, 제145호서식부터 제146호서식까지, 제148호서식부터 제149호서식까지, 제151호서식부터 제153호서식까지, 제155호서식, 제160호서식, 제164호서식)

## 3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11. 27.      • 마감일자 : 2018. 12. 11.
- 조례·규칙심의회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해석될 수 있도록 하고, 종이-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포 관련 규정을 정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조례·규칙심의회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예산안·결산안이 임의적 의결사항임을 명확화(안 제28조)
    - 1)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수식 범위에 ‘예산안·결산안’이 포함되도록 문언 정비
  - 나. 공보를 종이 또는 전자공보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0조)
    - 1)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선택 또는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2) 종이-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

### 3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11. 28.      • 마감일자 : 2019. 1. 7.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안(입법예고 : '18.5.3.-6.12.)에 대한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화학물질확인번호 등의 정보제공(안 제9조의3)
    - 1) 화학물질확인신고를 한 자가 화학물질을 사용, 보관·저장, 운반, 판매 및 수출하는 영업을 하는자에게 양도할 때에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해야하며,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 받은 자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 보관 저장, 운반, 판매 및 수출하는 영업을 하는자에게 양도할 때에도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제공해야함
    - 2) 화학물질을 양수받는 자가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요구할 때에는 제공해야함
  - 나. 벌칙(안 제61조)
    - 1) 국외제조자로부터 선임된 자가 화학물질확인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확인신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

### 3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11. 28.      • 마감일자 : 2019. 1. 7.
- 2014년 이후 각각 2년 및 3년 등의 주기로 설정한 규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 신청, 위험물 반입 신고, 선박수리허가 신청 등 항내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 및 질서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정은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는 등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박지의 지정 신청, 위험물 반입 신고, 위험물 하역 제한,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선박수리 허가 신청 등에 관한 규제의 일몰 해제(안 제35조 제2호, 제4호부터 제11호)

1) 법령에 따른 정박지의 지정 신청(제2호), 위험물 반입 신고(제4호), 위험물 하역의 제한(제5호),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제6호), 선박수리 허가 신청(제7호), 위험 예방조치의 요청(제8호), 공사 등의 허가 신청(제9호), 행사 허가 신청(제10호), 부유 등의 허가 신청(제11호)과 관련된 규제는 항내 통항 안전성 및 질서 유지 확보 등을 위한 필수적인 규정이므로 존속이 필요

나. 수수료 부과기준의 규제적용 제외(안 제35조 제12호)

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관련 사항이 행정규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

### 35.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11. 28.      • 마감일자 : 2019. 1. 7.

○ 동해·묵호항 동해지구 3단계 개발사업 계획 반영과 항만개발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을 위해 동해·묵호항의 항계선을 확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해·묵호항 수상구역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1)

1) 동해·묵호항 수상구역 확장

### 3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11. 29.      • 마감일자 : 2019. 1. 8.

○ 대기환경보전법 상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환경청장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적용 세부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분류(2017.1.13. 개정,

2017.7.1. 시행)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환경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환경청장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63조제2호 제8호)
- 나.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적용 세부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분류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 9의2)

### 3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11. 29.      • 마감일자 : 2019. 1. 8.

○ 미세먼지 및 오존의 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비산누출시설 개수의 누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변경신고 사항과 변경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플레어스택의 비정상 가동시 매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추가수단을 마련하는 등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비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변경(안 제51조의2제3항)
  - 1)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비산누출시설 개수의 누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기한을 최초 점검보고서 제출전까지에서 배관 일부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이후 30일까지로 정함
- 나.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변경(안 별표 10의2)
  - 1) 플레어스택 매연 발생시 보고 요건 강화, 저장시설 누출점검 기준 신설, 비산누출시설 누출농도기준 강화 등 비산배출 걱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하고, 불명확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시설관리기준을 개선함

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 변경(안 별표 10의3)

- 1) 취급농도가 높은 시설 등으로 누출점검 대상 시설을 구체화하고, 직접 연소에 의한 시설에 측정구가 없는 경우에는 저감효율 측정 없이 굴뚝 농도만 측정하도록 하는 등 정기점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설관리기준 강화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점검 항목을 개정함

라.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강화(안 별표 16의2)

- 1) 현행 규제 대상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강화하고, 비규제 대상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마련함

### 38.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11. 30.      • 마감일자 : 2018. 12. 10.
-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체가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19.12.31.까지로 1년 연장하고, 중견기업체가 이를 수입하는 경우 감면율을 30%로 하여 적용 기한을 2019.12.31.까지로 하여 1년 연장하며, 현재 관세감면 대상이 되는 68개 물품 중 유압펌프 등 22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습식 분사기 등 3개 품목을 추가하는 등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관세감면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현행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의 조항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사전에 정비하려는 것임.

### 3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1. 30.      • 마감일자 : 2019. 1. 11.
-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778호, 2018. 9.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타워크레인의 안전과 밀접한 장치 및 부품을 부품인증 대상으로 규정하여 관리

를 강화함으로써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수시적성검사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적격 조종사의 건설기계 조종을 예방하며, 또한, 건설기계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고기간을 완화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상속으로 이전 등록시 신고기간 완화(안 제5조 및 제6조)

- 1) ‘17년 제2차 행정제도 개선과제로서, 건설기계 상속에 따른 이전 등록 신고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시와 동일한 신고기간(6개월 이내)을 규정

나. 검사총괄기관의 타워크레인 정기·수시검사업무 배제(안 제10조의3)

- 1) 법률에서 타워크레인 검사총괄기관이 수행할 없는 검사업무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 2) 검사총괄기관은 다른 검사기관이 수행한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하므로, 타워크레인의 정기 및 수시검사업무는 직접 수행할 없도록 규정함
- 3) 타워크레인 검사총괄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

다. 타워크레인 및 타워크레인 부품의 내구연한 규정(안 제12조의3)

-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건설기계와 부품에 대해 내구연한을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 2)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20년, 타워크레인 마스트용 볼트 및 핀의 내구연한을 5년으로 규정
- 3) 타워크레인 및 부품의 내구연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기계분야 안전성을 확보하여 건설현장사고 방지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

라.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대상 규정(안 제12조의4)

- 1)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제 도입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안전과 밀접한 타워크레인의 유압실린더, 브레이크라이닝 등의 부품을 부품인증 대상으로 규정함

마. 건설기계조종사 수시적성검사 절차 마련(안 제16조의4)

-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상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날까지 3개월 이내에 받도록 절차를 규정

바.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및 부품인증 업무 위탁(안 제18조의3)

- 1)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를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에게 위탁하고, 부품인증 업무는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위탁함

\* 타워크레인 검사기관(6)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공공),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사)한국안전기술협회, (주)한국산업안전, (주)KI기술, 한국산업안전검사(주)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의4)

- 1) 법 제44조에 따라, 검사총괄기관의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